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25. 12. 18.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25년 11월 7일
나. 발의자: 박현우 의원 외 4명
다. 회부일자: 2025년 11월 17일
라. 상정일자: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11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박현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,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북한 이탈주민의 날 행사, 기념물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범위를 사회통합, 문화행사, 인권 관련 기념물 설치·관리까지 구체적으로 확대함. 또한, '북한이탈주민의 날' 공식 기념행사 및 지원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정책 실효성과 상징적 지원을 높임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2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,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의 범위를 세분화하고, 안 제6조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였으며, 안 제7조의 협의회의 기능에 지원 사항과 행사에 관한 사항을 담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.

○ 검토 결과

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여, 탈북민이 중국 등 제3국에서 낳은 자녀(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)들은 한국 국적은 갖지만, 법률상 “보호대상자(법 제2조제2호)”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음.
- 그러나 최근에는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개정 (2024.10.22. 일부개정)되면서, 교육지원 대상을 기준 ‘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’에서 ‘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’까지로 확대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,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안 제2조에서 비보호대상자이지만 관내 주민인 자들을 조례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개정 내용은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짐.
- 안 제5조에서는 지원 사업의 범위에 △기초생활물품 지원 등 생활 편의 제공, △의료 및 돌봄 지원, △취업 및 장기근속 지원, △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, △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·체육행사 개최, △북한이탈주민 권리 및 북한인권과 관련한 조형물·동상 등 기념물 설치·지원 및 관리 등을 구체화하거나 신설 규정하였으며, 안 제7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에 △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지원, △북한이탈주민 대상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됨.
-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의 특성상 한부모가족, 1인 가족 등으로 가족 유형이 다양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육아 및 아이돌봄을 동시에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바, 본 일부개정 조례 안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항들을 세분화하는 것은 각종 행정적·재정적 조치를 함에 있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 타당성이 인정됨.
- 아울러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(1997.7.14.)된 날을 기념하여 매년 7월 14일이 ‘북한이탈주민의 날’로 지정되었으며, 동법 제4조의4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축제에 맞는 행사,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6조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의 근거가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현우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31
------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11. .

발 의 자: 박현우·임현호·최인순
이순우·정선희 의원 (5인)

1. 제안이유

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, 통일인식 제고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, 기념물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범위를 사회통합, 문화행사, 인권 관련 기념물 설치·관리까지 구체적으로 확대함. 또한, '북한이탈주민의 날' 공식 기념 행사 및 지원협의회 기능 강화를 통해 정책 실효성과 상징적 지원을 높임.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”를 “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자로서”로 한다.
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9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3. 기초생활물품 지원 등 생활편의 제공
4. 의료 및 돌봄 지원
5. 취업 및 장기근속 지원
6.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
7.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·체육행사 개최
8. 북한이탈주민 권리 및 북한인권과 관련한 조형물·동상 등 기념물 설치·지원 및 관리

제6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, 제6조를 다

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) 구청장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다양한 문화활동 등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하고, 통일 인식을 고양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종전의 제7조)제1호 중 “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”을 “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,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”을 “그 자녀의 교육지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북한이탈주민”이란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, 서울특별시 영등포구(이하 “영등포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2. · 3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.</p> <p>1. ----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자로서-----.</p> <p>-----.</p> <p>-----.</p> <p>2. ·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지원범위)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</p> <p>4.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·체육행사 지원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5조(지원범위) ① -----.</p> <p>-----.</p> <p>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기초생활물품 지원 등 생활편의 제공</p> <p>4. 의료 및 돌봄 지원</p> <p>5. 취업 및 장기근속 지원</p> <p>6.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</p> <p>7.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·체육행사 개최</p>

<p><u><신 설></u></p> <p>5. (생 략) ②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제6조</u> (생 략)</p> <p><u>제7조</u>(협의회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 한다.</p> <p>1. <u>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</u>에 관한 사항</p> <p>2. <u>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,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</u>에 관한 사항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3. • 4. (생 략)</p> <p><u>제8조 ~ 제19조</u> (생 략)</p>	<p>8. <u>북한이탈주민 권리 및 북한 인권과 관련한 조형물·동상 등 기념물 설치·지원 및 관리</u></p> <p>9. (현행 제5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6조(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)</u></p> <p>구청장은 매년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다양한 문화활동 등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하고, 통일 인식을 고양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<u>제7조</u> (현행 제6조와 같음)</p> <p><u>제8조</u>(협의회 기능) ----- ----- ----</p> <p>1. <u>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</u>----</p> <p>2. ----- <u>그 자녀의 교육지원</u>----- -----</p> <p>3. <u>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4. • 5.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)</p> <p><u>제9조 ~ 제20조</u> (현행 제8조부터 제19조까지와 같음)</p>
---	--